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방위산업기술 보호 종합계획에 재원확보 포함 등〉

■ 홍기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771호)

2026. 8.

국 방 위 원 회

전문위원 문 성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방위산업기술 보호 종합계획에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포함	2
2. 방위산업기술 보호 지원대상을 ‘협력관계를 가지는 기관’으로 확대·	4

I. 제안경위

- 1) 발 의 자 : 홍기원의원 등 10인
- 2) 발의연월일 : 2026. 4. 30.
- 3) 회 부 일 : 2026. 5.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대상기관을 정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위사업계약에 참여하는 대상기관의 보안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우회하여 보안 역량이 취약한 중소·중견 규모의 협력업체들을 노리는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방위산업기술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도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에게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시 재원 확보 노력을 하도록 함으로써 대상기관 및 중소·중견 협력업체의 보안 역량을 제고하고 예산 확보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7호의2 신설 및 제14조 등).

Ⅲ. 검토의견

1. 방위산업기술 보호 종합계획에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포함

□ 개정안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방위사업청장으로 하여금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7호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 ② (생략)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생략) <u><신설></u> 8. (생략) ④ (생략) <u><신설></u> ⑤ (생략)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7. (현행과 같음) <u>7의2.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u> 8.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u>방위사업청장은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이러한 종합계획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보호기반 구축, 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¹⁾

최근 종합계획('22~'26)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보호기반 강화, 기술 보호 대내외 협력 활성화, 기술보호 인식 제고 및 인력 관리 강화, 자율적 보호체계 구축 유도 및 지원 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음.

□ 방위산업기술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핵심기술로서 유출될 경우 군사력 약화, 방산 수출 경쟁력 저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정부가 단편적·사후적 대응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술보호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것임.

종합계획은 방위산업기술 보호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 의지를 제시하고, 관계기관 간 정책의 연계·조정 기능을 수행하며, 관련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의 근거로 기능하고 있음.

-
- 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방위사업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단계별 목표와 추진방안
 3. 방위산업기술의 보호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시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률에 근거한 종합계획에 관련 사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재정여건,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예산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관심과 노력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종합계획에 포함된 각종 정책 및 사업의 시행에는 이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가 통상적으로 수반되고, 현행법상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한 사항도 주로 정책의 목표·방향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항목으로 종합계획에 명시하고, 방위사업청장에게 다시 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의무를 부과할 입법적 실익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2. 방위산업기술 보호 지원대상을 ‘협력관계를 가지는 기관’으로 확대

- 개정안은 국방과학연구소 등 대상기관²⁾뿐만 아니라 ‘대상기관과

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위산업기술”이란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제7조에 따라 지정하고 고시한 것을 말한다.
2. “대상기관”이란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나.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사업청·각군·국방기술품질원·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다. 그 밖에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 및 대학 등

협력관계를 가지는 기관'에 대하여도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① 정부는 <u>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거나 개선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함에 있어서</u>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① ----- <u>대상기관이나 대상기관과 협력관계를 가지는 기관에 대하여</u>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u>방법·범위 및 절차</u>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u>대상(대상기관과 협력관계를 가지는 기관을 포함한다)·방법</u> -----
	-----.

□ 현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4조³⁾는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거나 개선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

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4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① 정부는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거나 개선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함에 있어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비용지원
2.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지원
3.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 및 기술개발의 지원
4.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는 경우, 정부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비용, 전문인력 양성, 기술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⁴⁾

□ 최근 사이버 위협의 고도화 및 해외 기관·기업의 방위산업기술 탈취 시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방산분야 주요 사이버 공격 대상이 주요방산업체에서 일반방산업체로 확대됨에 따라 방위산업 전반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2020년~2025년 방산업체 등 방산기술유출 신고 접수 현황]

(단위: 건)

구 분	방산업체			협력업체			출연기관		합계
	자료 유출	미유출	확인 불가	자료 유출	미유출	확인 불가	자료 유출	미유출	
'20년	5	6	-	-	-	-	1	-	12
'21년	8	12	3	-	2	3	-	-	28
'22년	1	8	1	2	2	-	-	1	15
'23년	2	2	1	2	-	-	-	-	7
'24년	3	2	3	14	-	3	-	-	25
'25년	6	5	-	10	-	1	-	-	22
합 계	25	35	8	28	4	7	1	1	109

*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 자료 재구성

□ 지원 대상을 '대상기관과 협력관계⁵⁾를 가지는 기관'까지 확대하는

4) 참고자료: 최근 방위산업기술보호 강화 주요 개정내용

5) 현행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41조는 대상기관과 연구·개발 및 제조와 관련하여 동업·협업 또는 하도급 등의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기관·개인에 대한 기술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순차적 재하도급 등의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적절한 기술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것은 방위산업 관련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의 기술보호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상대적으로 보안 역량이 취약한 협력기관을 통한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업체·일반업체 등 구분]

구 분	정 의
방산업체	방산물자 ⁶⁾ 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지정된 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방산업체가 아닌 업체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	군수품 ⁷⁾ 을 납품하는 업체로서 방산업체 또는 일반업체가 아닌 업체

□ 다만, 개정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상기관과 협력관계를 가지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41조(협력업체 기술보호) ① 대상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및 제조와 관련하여 동업, 협업 또는 하도급 등의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해 적절한 기술 보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동업, 협업 또는 하도급관계에 있는 협력업체, 기관의 대표 또는 개인에게 순차적 재하도급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재하도급 업체 등을 말한다)에게 적절한 기술 보호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6) 「방위사업법」 제34조(방산물자의 지정)①방위사업청장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 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이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방산물자는 주요방산물자와 일반방산물자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7) 「군수품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수품"이란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와 육군·해군·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동산은 제외한다.

1. 현금
2.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탁하여야 할 유가증권
3.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

기관'은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지원대상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협력관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는 경우 한정된 재원이 분산되어 방위산업기술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기관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우려도 있음.

따라서 개정안 제14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지원대상이 되는 협력관계의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현행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41조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개발 및 제조와 관련한 동업·협업·하도급 등의 관계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⁹⁾

문 의 처
02)6788-5312

8)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방위사업청훈령) 제41조(협력업체 기술보호) ① 대상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및 제조와 관련하여 동업, 협업 또는 하도급 등의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해 적절한 기술 보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9) 국방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안)

현 행	개 정 안
제19조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u>지원 내용과 지원 신청 절차</u>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신 설> ③ ~ ⑤ (생 략)	제19조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① ----- ----- <u>지원 대</u> <u>상과 내용 및 지원 신청 절차 등</u>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4조제1항의 “대상기관과 협력관계를 가지는 기관”이란 연구·개발 및 제조와 관련하여 동업, 협업 또는 하도급 등의 관계에 있는 기관을 말한다. ④ ~ ⑥ (현행 ③ ~ ⑤와 같음)

※참고자료: 최근 방위산업기술보호 강화 주요 개정내용

해당 조문	주요 개정내용
방산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구체화 (제13조제1항)	대상기관에 방산기술 보호체계를 구축·운영의무 부과 1. 보호구역의 설정·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2. 방산기술 취급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방산기술보호지침 제정 근거 신설(제13조의2)	방사청장은 방산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지침을 정하여야 함
방산기술 보호지원 전담 기관 신설(제16조의2)	방사청장은 방산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방사청 출연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방산기술 유출현황 국 회보고 신설(제18조의2)	방사청장은 방산기술 외국 유출·침해 현황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소관 상임위에 보고
방산기술 유출시 처 벌 조항 강화(제21조 제1항)	방위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0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6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방산기술보호 전문 인력 고용지원 등 (제14조의2)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비용 보조 등의 지원